

제404회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3월23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7)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1)
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2)
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3)
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5)
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9)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88)
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3)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7)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5)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3)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2)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3)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8)
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8)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9)
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3)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1)
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7)
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9)
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54)
27.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9)
28.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46)
29.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8)
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4)
3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8)

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7)
3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3)
3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3)
3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6)
38.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0)
39.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52)
4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7)
41.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4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40)
4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83)
4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6)
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5)
4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5)
4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8)
4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9)
5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4)
5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4)
5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0)
5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3)
5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4)
5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50)
5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35)
5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86)
6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2)
6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4)
6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7)
6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2)
6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6)
6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4)
6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37)
6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89)
6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1)
7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5)
7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4)
7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5)
7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5)
7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4)

7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7)
7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1)
7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1)
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1)
8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1)
8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5)
8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6)
8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1)
8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6.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2)
8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7)
8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00)
89.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2)
9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80)
9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7)
9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9)
9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3)
9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25)
9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7)
9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4)
9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0)
9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6)
9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0)
100.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8)
10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67)
1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8)
10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3)
10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94)
1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0)
10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8)
1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8)
10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1)
109.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9)
1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9)
1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3)
11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748)
1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1)
1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4)
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64)
116.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90)

1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3)
1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3)
1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1)
1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72)
1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5)
1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5)
1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8)
1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95)
1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6)
1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5)
12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4)
12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65)
12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3)
1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9)
1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2)
13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8)
13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91)
13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6)
135.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9)
13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 보완에 관한 청원(전혜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84)
137.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관한 청원(장동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97)
138.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 촉구에 관한 청원(임여정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13)
139.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신속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나현아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98)
140.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박시영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96)
141.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박시영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95)
142. XLH저인산혈증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의 신속 사용 승인에 관한 청원(박순배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07)

상정된 안건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8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7) 12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1) 12
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2) 12
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3) 12
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5) 12

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9)	12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88)	12
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3)	12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1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7)	12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5)	12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3)	12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2)	12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3)	12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8)	12
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8)	12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9)	12
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3)	12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2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1)	12
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7)	12
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9)	12
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2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54)	12
27.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9)	12
28.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46)	12
29.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8)	12
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4)	12
3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8)	12
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7)	12
3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3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3)	12
3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3)	12
3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6)	12
38.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0)	12
39.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52)	12
4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7)	12
41.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12
4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40)	12
4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83)	12
4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6)	12
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4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5)	12
4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5)	13
4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8)	13
4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9)	13

5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4)	13
5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4)	13
5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0)	13
5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5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3)	13
5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4)	13
5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5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50)	13
5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35)	13
5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86)	13
6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2)	13
6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4)	13
6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7)	13
6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2)	13
6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6)	13
6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4)	13
6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6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37)	13
6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89)	13
6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1)	13
7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5)	13
7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4)	13
7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5)	13
7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5)	13
7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7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4) ..	13
7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7)	13
7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1)	13
7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1)	13
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8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1)	13
8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8611)	13
8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5)	13
8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6) ..	13
8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1) ..	13
8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86.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2)	13
8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7) ..	20
8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00)	20
89.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2)	20
9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80)	20
9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7)	20
9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9)	20

9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3)	20
9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25)	20
9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7)	20
9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4)	20
9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0)	20
9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6)	20
9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0)	20
100.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8)	20
10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67)	20
1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8)	20
10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3)	21
10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94)	21
1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0)	21
10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8)	21
1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8)	21
10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1) ..	21
109.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9)	21
1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9799)	21
1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9803)	21
11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748)	21
1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1)	21
1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4)	21
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64)	21
116.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90)	21
1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3)	21
1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3)	21
1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1)	21
1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72)	21
1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5)	21
1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5)	21
1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8)	21
1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95)	21
1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6)	21
1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5)	21
12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4) ..	21
12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65)	21
12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3)	21
1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9599)	21
1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9822)	21
13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20018)	21
13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91)	21
13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6)	21
135.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9)	21
13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 보완에 관한 청원(전혜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84)	21
137.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관한 청원(장동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97)	21
138.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 측구에 관한 청원(임여정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13)	21
139.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신속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나현아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98)	21
140.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박시영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96)	21
141.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박시영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95)	21
142. XLH저인산혈증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의 신속 사용 승인에 관한 청원(박순배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07)	22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정춘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듣고 의결한 다음 법안 및 청원을 상정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의 양해를 거쳐 박민수 보건복지부2차관이 메디컬코리아2023 행사 참석으로 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FDA 방문 등 미국 출장으로 회의에 불참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 행사 참석으로 11시경에 이석할 예정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위원장 정춘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

○위원장 정춘숙 이것을 의결하고 하시지요.

○김미애 위원 아니, 저런 피켓을 부착하지 않기로 했는데 재석도 안 하면서 저것을 부착하고 있는 것은 전혀 우리 상임위원회와 맞지 않다……

○강훈식 위원 얹기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저희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미애 위원 아니, 저희들도 마찬가지지요. 저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되지요.

○이종성 위원 아니, 회의장 분위기를 어떻게……

○김미애 위원 저것을 떼 주십시오.

○강훈식 위원 간사 간에 이야기할게요.

○김미애 위원 아니, 본인도 안 계신데 저렇게 붙여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석도 안 한 상황에서?

○이종성 위원 간사님, 저것 떼고 합시다.

○위원장 정춘숙 여기 간사님 오시면 의논해서……

○김미애 위원 아니, 간사님 이전에 위원장께서 하셔야지요.

○위원장 정춘숙 아닙니다. 여기는 또……

○김미애 위원 아니, 재석도 안 한 상황에서 저것을 부착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정춘숙 김미애 위원님, 일단은 지금 강훈식 간사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남인순 위원 태극기 붙인 것 가지고……

○김미애 위원 태극기만 붙인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춘숙 강기윤 간사님 오시면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아니, 위원장께서 해 주십시오. 간사가 진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춘숙 김미애 위원님, 이것은 민주당의 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미애 위원 과거에 우리가 이 장소에서 저런 것 부착해서 회의 진행을 안 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민주당이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종성 위원 우리가 한다고 그래서 다 반대해 가지고 다 뺐잖아요.

○강훈식 위원 해당 위원님 오시면 물어보세요.

○김미애 위원 아니, 해당 위원님은 계시지도 않는데 그러면……

○강훈식 위원 그러면 간사끼리 합의하게 두시든지, 어떻게 본인이 운영하려고 하세요?

○김미애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재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것 부착하고 다니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강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원님한테 물어보시라고요.

○김미애 위원 아니,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춘숙 김미애 위원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간사님 오시면……

○김미애 위원 간사님 오시기 전에 위원장님이 하셔야지요.

○위원장 정춘숙 저는 간사님 오시면 의논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위원 그러면 간사님 올 때까지 정회하세요.

○김미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그것은 제가 정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위원님들, 회의 진행을 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김미애 위원 회의를 일방적으로 하시잖아요, 지금.

○위원장 정춘숙 제가 무슨 일방적으로 해요?

○김미애 위원 그게 일방적이지 않으면 됩니까?

○위원장 정춘숙 김미애 위원님, 말씀 가려 하세요. 무슨 일방적으로 합니까, 지금!

○김미애 위원 그게 일방적이지요!

○위원장 정춘숙 뭐가 일방적이에요, 지금!

○김미애 위원 이게 위원장께서 하실 일 아닙니까?

○위원장 정춘숙 회의도 늦게 들어오셔서 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 하시게 생겼습니까?

○김미애 위원 일부러 늦게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 오시지도 않고 저런 것 부착하는 것은 왜 말씀하지 않으세요?

○위원장 정춘숙 그리고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회의 진행을 기본적으로 다 여기는 건 김미애 위원님이세요.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춘숙 저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요청하셔서 제가 이것 의결하고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미애 위원 의결 전에 제 앞에 바로 보여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김미애 위원님, 강기윤 간사님 오시면 간사 간에 합의해서 정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일방적으로 하시네.

○위원장 정춘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하였고요.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XLH저인산혈증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의 신속 사용 승인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을 선례에 따라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위원 저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예, 하세요, 이종성 위원님.

○강기윤 위원 아니, 좀 늦게 하기로 안 했나?

○강훈식 위원 15분에……

○강기윤 위원 여당 간사도 오지 않았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아요?

○이종성 위원 아니, 회의를 진행을 하자는 건지 말자라는 건지……

○강기윤 위원 서로 약속에 의해서 한 20분 늦었다고 했잖아.

○강훈식 위원 15분에 약속하신 것 아니에요?

○이종성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당이 팻말 걸었을 때 치워달라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 치우고 회의 시작했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위원장 정춘숙 계속하세요.

○이종성 위원 이래 가지고 무슨 회의를 하겠어요. 여기 정쟁의 장입니까? 정쟁을 하자고 시작하면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정춘숙 말씀 계속하세요.

○이종성 위원 저것을 치우고 회의를 다시 속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다 끝나셨나요?

두 분 간사님, 저 문제를 의논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회의를 안 할 수는 없으니 의논하시는 사이에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0시 15분으로 회의 개최를 알고 있었고요. 회의 시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분 간사님……

○강기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춘숙 예.

○강기윤 위원 양당 간사 간에, 오늘 우리 강훈식 간사도 일정이 좀 있고 또 우리 여당 쪽에도 위원들이 일부 세미나를 주최하는 것도 있고 토론회를 주최하는 것도 있어서 조금 시간을 딜레이하면 좋겠다 해서 대략적으로 한 10시 20분에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도 그 통지받았으면, 방금 15분에 했는데 그래도 오지 않았으면 조금 기다리는 여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꼭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여당 간사나 왔을 때 그렇게 하면 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은미 위원 의사진행발언……

○서정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의당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비교섭단체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회의는 위원들만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수많은 공직자가 시간 맞춰

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늦게 와서 저렇게, 늦게 온 시간을 배려하지 않고 일찍 제시간에 회의를 시작했다고 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고요.

10시에 회의를 한다고 공지했다가 15분으로 뒤로 늦췄으면 적어도 다 공지를 받았을 텐데 그러면 제시간에 오셨어야 맞는 거고 늦게 오셨으면 미안한 표정으로 앉아서 회의를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서정숙 위원님.

○서정숙 위원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제 바로 정면에 불참하신 김원이 위원님이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구호를 붙여 놓으셨는데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걸 제가 보기에는 두 간사님이 의논해서 결정할 일도 아니고요, 이 회의를 주재하시는 우리 상임위원장이 판단하셔서 바로 조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제가 앞에도 김미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이걸 민주당에서 붙이신 부분이고 그래서 두 분 간사가 의논하셔서 정하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10시 15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20분 넘었고요, 시작한 시간이. 그래서 금방 오시리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시간 지키는 건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또 양해해야 되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상황에 맞춰서 하는데 사실은 오늘은 좀 늦게 시작이 된 점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의논하셔서요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 간사님, 저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많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떼고 하세요.

○서정숙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 개개인도 다 동등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종성 위원 진행이 안 돼요. 저래 놓고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자고 하십니까?

○서정숙 위원 그럼요.

○이종성 위원 그러면 우리도 여기다 붙여요?

○강훈식 위원 저희끼리 합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제 그만 이야기해 주시고요. 간사간에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춘숙 잠깐만, 그러면 남인순 위원.

○남인순 위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도, 심지어는 청문회 할 때도 본인들의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 피켓을 부착해서 그때도 제가 청문회 할 동안은 떼고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떼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상호 의논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정리하고 또 여야 간사 간에 얘기를 해서 어느 시점에 떼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역지사지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들이 붙이신 것도 아니고, 저희는 원래 자율적으로 붙이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붙이려고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문제가 돼서 아직 부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붙이고 했다 이걸 아닙니다. 과거에 다 야당일 때 하신 적 있으시고요, 제가 직접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께서 이걸 굳이 정회까지 할 사안은 아니에요. 그런 사안은 아니니까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춘숙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들이 양 간사께서 1소위원장, 2소위원장으로 보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따로 드리는 게 지금 마땅하지는 않아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춘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기윤 간사님.

○강기윤 위원 우리 상임위는 정춘숙 위원장님과 함께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복지위원들이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와중에 아침에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제가 진위를 알아보니 사실은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강훈식 간사를 통해서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자발적입니다마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김원이 위원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 아마 보좌진들이 100%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되었고 또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 야당 위원 라인에서는 그걸 보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했던 김미애 위원이 아마 그것을 보고 그 부분을 항의하면서 앞으로 그 부분도…… 야당 위원들도 이 내용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강하게 항거를 하니까 좀 불쾌했다 이런 말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정중하고 예를 갖추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에서 사전에 간사 간에 합의가 되고 하는 관행들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돌출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유하게 우리가 정중한 어떤 의사표시를 통해서 그것이 수정되고 또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강훈식 간사님.

○강훈식 위원 이전에 이런 적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있으셨습니다. 권덕철 인사청문회 때 당시 야당의 위원님들이 ‘독재정당 민주당’ 피켓 들고 청문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민석 위원장이셨고요.

상임위 안에서 피켓을 드는 것이 늘 여야가 바뀔 때마다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때는, 불과 1년 몇 개월 전에 권덕철 장관 인사청문회 때 우리가 야당일 때는 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야당일 때는 언제 이런 적이 있었나 이런 논리로는 설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기윤 간사께서 유감의 말씀도 주시고 상임위를 잘 이끌어 오자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의 옳은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언론인들이 보실 텐데요.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게 아마 오늘 팩트체크의 핵심일 겁니다. 그런 적이 있었나 없었나 보도가 아마 많이 날 거라고 보는데요. 여야가 달라져도 피켓 문제 가지고 이렇게 상대 위원들에 화를 내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건 위원들끼리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춘숙 알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7)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11)
4.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2)
5.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3)
6.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35)
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79)
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88)
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83)
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57)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5)
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3)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2)
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93)
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8)
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58)
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79)
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3)
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

- 발의)(의안번호 2112381)
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7)
2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9)
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54)
27.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9)
28.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46)
29.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8)
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4)
3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8)
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47)
3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23)
3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93)
37.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66)
38.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0)
39.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52)
4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7)
41.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4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40)
4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83)
4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6)
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65)

4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35)
4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8)
4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9)
5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4)
5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4)
5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0)
5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03)
5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74)
5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750)
5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35)
5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86)
6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2)
6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4)
6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47)
6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2)
6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6)
6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4)
6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37)
6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89)
6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91)
7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75)

7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34)
7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5)
7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75)
7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4)
7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17)
7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1)
7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1)
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1)
8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11)
8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5)
8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6)
8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1)
8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6.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42)

(10시48분)

○위원장 정춘숙 의사일정 제2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6항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장님들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윤 제1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기윤 1법안심사소위원장 강기윤 위원입니다.

우리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41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 5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22건은 통합 조정하여 6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정의와 결격사유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공인력 결격사유 중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조정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기에 처한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보장기관에 알려야 하는 신고의무자의 직종에 지원 대상자와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자살예방센터 관계자,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은희 의원, 김희재 의원,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예방협의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현영 의원, 최연숙 의원,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동의 주된 생활공간인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18세에 달하기 전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을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자립 지원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 금액을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시행일과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안 시행 당시까지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하였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인순 의원, 고영인 의원, 김성주 의원, 강훈식 의원, 이종성 의원,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광고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폐업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처리계획서 제출 및 이행 근거를 신설하며 의료인 등이 의약품 판촉영업자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 신고제를 도입하고 판매질서에 관한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의결된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한 취지에서 판촉영업의 재위탁을 허용하되 재위탁 시 원위탁자 고지 등 재위탁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불법 병원지원금의 요구·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병원지원금 관련 담합 행위 규제를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 예정자까지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이러한 담합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지부장관이 2년마다 핵심적인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한의학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영석 의원, 이종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한의학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인순 의원, 김원이 의원,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조 등이 의심되는 처방전에 대하여 마약류소매업자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조제 거부 사유를 규정하고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원소유자에게 반품하거나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환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며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상의 학교교육을 연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출액이 높은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일수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2억 원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매출액이 낮은 다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조정하고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11시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서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훈식 제2법안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훈식 제2법안심사소위원장 강훈식 위원입니다.

우리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57건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1건은 원안, 7건은 수정안으로 채택하고 35건은 통합 조정하여 8건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6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명칭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면서

업무의 범위를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개선으로 확대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광고시간 제한 대상 매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추가하는 취지입니다.

식생활안전관리원의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중복되지 않도록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백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지실사 회피 목적으로 등록을 철회한 영업자에 대해 완화된 허가제 형태로 등록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지실사 회피 목적 외의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을 철회한 사례도 있을 수 있는바 현지실사 외 서류 검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등록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강기윤 의원,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제정안과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정책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담배제조자 등은 담배 품목별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서 등을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협의하여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혜영 의원,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신분조회 요청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협조하도록 하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구축·운영 중인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 및 장애인에 대한 성 관련 상담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급자격 심의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항목별 결과를 포함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조사항목별 결과를 조사영역별 결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현영

의원, 최혜영 의원, 서정숙 의원, 김병기 의원, 김홍걸 의원, 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보육서비스 대상 나이와 일치시키고,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훼손 등에 대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며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훈 의원, 조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노인학대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을 추가하고 취업제한자의 취업 여부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며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동민 의원, 이정문 의원, 정춘숙 의원, 이종성 의원, 김원이 의원, 강은미 의원, 신현영 의원, 이종배 의원, 전해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정부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노력에 관한 부대의견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정문 의원, 정춘숙 의원, 이종성 의원, 김원이 의원, 신현영 의원, 이종배 의원, 전해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개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중앙의료원장장의 해임 사유에 명시된 심신상의 장애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용기 의원, 한정애 의원, 최연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에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

고 관련된 안내표지판 부착 의무 및 자동심장충격기 미점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제고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한국장기기증조직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기구득기관의 업무에 유족에 대한 관리와 지원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미 수립된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종합계획 규정의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 실태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하였습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계기관의 원활한 소통 및 신속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시도 단위 협의회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현영 의원,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두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핵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두 분 소위원장님과 법안소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한 법률안들 가운데 제정안인 의사일정 제41항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0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4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8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3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의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기에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1조부터 부칙까지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0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44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47항부터 제52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6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4항부터 55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57항부터 제65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67항부터 제73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

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76항부터 제78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5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 의사일정 제83항부터 84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6항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의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을 대리하여 이기일 1차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사소위를 통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62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법안 심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5년 더 연장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고독사 위기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독사 예방과 고독사 위험자의 신속한 발견 및 지원을 위한 근거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출산·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등 38건의 법률안 개정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복지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결해 주신 주요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들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철저히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데 최선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의에 애써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대리하여 권오상 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 위원님 여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 9건의 법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으로 담배의 유해 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하는 등 체계적인 유해성 관리를 통해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위조 의심 처방전에 대한 조제 거부와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마약류를 원소유자에게 반품하거나 마약류 취급승인 받은 환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어린이 급식 위생과 영양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제한 대상을 현재 텔레비전 방송에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에 같은 과징금 상한을 현재 2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로 높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현지 실사 회피 목적으로 해외 제조소나 해외 작업장이 등록을 철회한 경우 현지 실사를 거쳐 재등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심의해 주신 강기윤·강훈식 법안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을 통해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

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결핵 감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결핵 환자와 관리 대상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결핵 예방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개정법률안의 남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심의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8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7)

8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00)

89.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82)

9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80)

9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7)

9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9)

9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3)

9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25)

9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87)

9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714)

9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0180)

9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776)

9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9950)

100.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8)

10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67)

1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8)

10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3)
10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94)
1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0)
10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8)
10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8)
10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41)
109.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9)
1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9)
1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03)
11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748)
1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71)
1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4)
1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64)
116.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90)
11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53)
1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3)
1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31)
1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72)
1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5)
1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95)
1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18)
1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95)
1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16)
1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35)
12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94)
12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65)
12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33)
1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99)
13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2)
13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18)
13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91)
13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86)
135.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09)
13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 보완에 관한 청원(전혜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84)
137. 노인복지법의 개정에 관한 청원(장동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97)
138.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 촉구에 관한 청원(임여정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13)
139.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신속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나현아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98)
140.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박시영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96)
141.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박시영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95)

**142. XLH저인산혈증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의
신속 사용 승인에 관한 청원**(박순배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107)

(11시22분)

○**위원장 정춘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7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2항 XLH저인산혈증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의 신속 사용 승인에 관한 청원까지 49건의 법률안과 7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및 간사 위원 간 사전 협의에 따라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 및 청원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9건의 법률안과 7건의 청원에 대하여 요약본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안입니다.

김도읍 의원께서 발의하신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빈곤노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안에는 노인빈곤 예방 등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남인순·인재근 의원께서 각각 발의하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신질환자의 자립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입원제도 개선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강제치료 위주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치료와 회복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현행 복지서비스 전달체

계와 입퇴원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신요양시설 폐지, 행정입원 강화 등의 입법 조치는 사회적·의료적 영향이 상당히 큰 사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서영교 의원께서 발의하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및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개정하여 타의에 의한 마약의 불법 투약·제공을 방지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투입되는 약물 다수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여 적용 범위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미애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에 대해서 질병관리청 중심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조사·감시·연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과 관계된 사항은 환경부,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소관 법률 및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의 건강보험 승인 촉구에 관한 청원 등 3건의 국민동의 청원 내용입니다.

3건의 청원은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신속한 사용허가 및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현재 해당 약제들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후 요양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으로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탑재되어 있는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법안 및 청원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할 순서입니다.

간사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토론시간은 발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차관님, 최강욱 의원님이 내신 법안인데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정책 조정권을 부여하고 지자체 협의체가 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동의하신다는 뜻인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남인순 위원 혹시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조영태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윤석열 정부 5년이 인구정책의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남인순 위원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1994년생이 지금 보통 29세 내지 30세인데 여자가 72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전의 1980년생에 비해서 20만 명 정도 훨씬 더 많이 태어났거든요, 그때. 그래서 94년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결혼도 할 수도 있고 출산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이기 때문에 이 인구층에 대한 굉장히 맞춤형 정책을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5년이지요. 그래서 골든 타임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 며칠 후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보고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부 여당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성이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둘 경우에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한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것은 저고위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부는 검토 안 하셨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남인순 위원 논의하신 적 없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없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럼 이런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오니까?

이 보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는 병역 면제로 커리어를 쌓는 동안 여자는 애 셋 낳느라 커리어 시작도 못 하겠다. 출산의 주체인 여성을 국가의 도구로 보냐, 하여튼 이런 얘기와…… 사실 가장 와닿는 얘기는 능력 있는 부모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30세 이전에 아이 셋을 낳느냐 이런 얘기부터 해서 부गत집 도련님을 위한 맞춤형 병역면제다라는 얘기,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성별 갈라치기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사실은 출생아 감소의 주 원인을 보면 무자녀 유배우 여성의 첫 자녀 출산이 감소하기 때문이거든요. 정책적 타격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다자녀 중심의 저출산 대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건 그동안 여러 번 얘기가 됐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이것 굉장히 잘못 짚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지금 말씀 주셨던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 빨리 결혼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결혼한 이후에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남인순 위원 검토도 안 된 얘기를 이렇게 막 해서 혼란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정책 같은 경우는 특히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이후에 이런 절차를 좀 보장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알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한 가지 더 현안이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면서 운영규정 개정안을 표결로 강행 처리했어요.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표결은 없었습니다.

○**남인순 위원** 표결은 없었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남인순 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전에는 표결은 없었던 것이고요, 이번에 3월 7일 날은 표결로 했었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렇지요? 표결로 강행한 적 없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남인순 위원** 잘 아시겠지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사실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한 그런 합병 조건이 됐는데 삼성물산 대주주가 국민연금이었잖아요. 국민연금의 찬성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연금이 불리한 조건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찬성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였지요? 기억 안 나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것은 그때 제가 그 라인에는 없었습니다.

○**남인순 위원** 다 아시면서 또 왜 그러십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복지부가 부당한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당시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다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되어서. 다 아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교훈을 갖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말 시장권력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어떤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체계를 만든 것 아닙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런데 그 역사적 큰 비용을 치르고 한 이 부분을 이렇게 수탁자전문위원회 구성 변경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복지부가 임의로 3명을 추천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지부가 또 개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남인순 위원** 뭐가 아닙니까?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서는 이것을 저희가 개입할 의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인순 위원** 이것 지금 국민이 다 지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저희도 그런 것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개입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부산 해운대율의 김미애입니다.

89번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감염성 질환의 경우는 질병청 중심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통제·관리되고 있지만 그 외 가습기 살균제 등 각종 비감염성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환경부·식약처·산자부 등 관련 법령과 소관 부처가 상이해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알기까지는 수년 아니면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지요, 청장님?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2006년에 가습기 살균제가 개발되었고 원인불명의 잇따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가 2011년에 당시의 질병본부가 이 원인을 밝혀내기도 했지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데 아까 보건복지위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면 비감염성 건강위해 요인과 관계된 사항은 환경부·식약처·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소관 법률 및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들 관계 부처의 의견수렴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또 이 법이 필요하기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인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 어떤 해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에 사실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소관 부처가 불분명한 까닭에.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법안은 원인이 불명한, 소관부처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조기에 그것을 탐지해서 어떤 소관 부서인지를 밝혀내서 거기서 이관을 하고 아니면 저희 부서 담당이면

저희가 하는 그런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이 법안이 제정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렇지요.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각종 건강위해 요인에 의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결국은 분절된 이런 것들을 협업을 통해서 빨리 원인을 밝혀내야 되는데, 그 컨트롤타워가 중요한데 자칫 부처 이기주의로 흘러서 이것이 유야무야 될까 상당히 염려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청장께서 관계 부처 설득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다음은 마약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어제, 그저께 백신 부작용 피해자분들을 모시고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과 공동으로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일반 국민들은 이제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일상 회복의 봄이 왔는데 아직도 돌아가신 분이나 또 지금도 중증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국민, 그 가족들은 여전히 암흑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 피해보상을 위해서 인과관계에 관한 여러 법안들 일부개정안도 또 특별법 제정안도 상당수 발의되어 있는데 논의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다른 나라하고 자꾸 비교하지 말고 우리 국민이 얼마나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지켰는지 그것은 당시의 백신 접종률이 말해 줍니다. 그렇지요?

게다가 질병청이 용역도 썼고 그 결과도 나왔습니다. 용역을 준 의미는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보는데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가 당시에 선언적인 약속이 아니라 실제 국가가 책임질 테니까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하라고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 줄 때입니다.

청장님, 신속히 이 부분도 정부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제안들이 있던 것을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

요, 최대한 더 포괄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미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강기윤 간사님과 여야 간사님께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제출되어 있는 개정안들 그리고 제정안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이 법안들을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질병청에서도 훨씬 전향적인 태도로 코로나 백신 피해자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위원장 정춘숙 다음은 존경하는 전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숙 위원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해숙입니다.

이기일 차관님!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전혜숙 위원 지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으로 인해서 전라북도도 발각 뒤집히고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 사실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도는 됐었는데 바로 대통령실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혜숙 위원 예, 했지요? 그러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발표할 필요가 있는데, 복지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이미 국민연금법의 27조에 전라북도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그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혜숙 위원 수익률 하락이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혜숙 위원 전북으로 이전한 후에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것은 다양합니다.

○전혜숙 위원 서울에 있을 때보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혜숙 위원** 작년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거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전혜숙 위원** 그런데 그때 전 세계적으로 연금금이 마이너스 실적을 했고 오히려 서울에 소재한 한국투자공사 경우에 역대 가장 낮은 -14.36, 미래에셋자산운용사 이런 민간에서 운용하는 데도 다 추산이 낮았습니다.

그것을 대통령께 보고할 때 정확하게 보고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운용 인력도 이탈이 사실은 예전에도 이탈했던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전혜숙 위원** 오히려 기금 운용하는 인력들의 처우 개선으로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것은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혜숙 위원** 불필요한 논란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본부에 대해서.

권오상 식약처 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법 보완 청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골프 패치라고 요즘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알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예, 들어 본 적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피부에 부착하는 다양한 패치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이것이 비타민 패치, 근육통증 완화 패치, 피로회복 패치, 숙취 해소 패치…… 기능성을 표방하는 수많은 패치들이 인터넷 쇼핑몰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무려 99만 개나 있더라고요.

또 자외선 차단 패치, 쿨링 패치 이런데 이게 공산품으로 되어 있지요? 의약품 아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종류에 따라서 공산품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일부는 또 의약품·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혜숙 위원** 그래서 어떤 것은 국외에서는 공산품인데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굉장히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서도 안 되고 식약처가 이것을 국민들께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나올 제품들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어떻게 정비하실 생각이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여러 가지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이것을 또 의약품으로 완전히 분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공산품과 의약품의 중간지대도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청원을 올렸는데요, 거기에서 심사숙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예, 의원실과 긴밀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 장관님도 안 계시고 또 소관 차관님이 안 계셔 가지고 이기일 차관님한테……

지금 WHO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종료를 만지작거리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이종성 위원**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대략 한 5월쯤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종성 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도 감염병 위기경보를 다운시킬 그런 순서로 가겠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것은 질병청장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종성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지금 임시적으로 허용을 해 놔줬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3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3년 동안에 얼마나 이용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비대면 진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3년간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시행이 되고 있고 사람으로 치게 되면 1379만 명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이종성 위원** 맞습니다. 거의 14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국민들이 이용을 했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WHO의 위기상황 해제라든가 복지부가 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낮추게 되면 이제 종료가 된단 말이지요.

문제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는 거의 10여 년 전부터 이동에 제약이 있고 접근권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한테는 이게 허용이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 요구를 했었는데 정부가 쫓쫓쫓 시범사업 좀 하다가 말고 시범사업 좀 하다가 말고 여태까지 정착이 안 됐는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사실 저는 이 1400만 명의 국민들이 이용하면서 여기에서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또 과생되는 어떤 문제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도화시켜야 된다, 코로나 국면이 끝나 가지고 이제 다시 없어지기 전에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법안을 낸 건데 엇그저께 소위에서도 일부 위원님들이 조금 우려를 하셔서 가지고 안 됐어요.

일단 정부에서도 동의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종성 위원** 그러면 소위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어떤 문제점, 갑자기 의료 민영화 얘기가 나오고 막 이상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의 우려들을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하고 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기에는 또 다른 어떤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대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점차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만들어 가지고 여야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 해야 이게 될 것 같은데 복지부가 좀 미온적인 것 같은 입장이라서 차관님께 촉구를 한번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3000만 건 이상이 돼 있고 1400만 명 정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심각에서 주의로 떨어지게 되면 이것을 못 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야 위원님들께서 소위에서 많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

어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위원** 시간 잠깐 남았는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과 관련해서 장애계의 반발이 있어서 곤욕을 치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지난 97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27년 동안 보건복지부 내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유일한 개방직 자리잖아요. 그런데 27년 만에 계속 장애인으로 임명해 왔던 그 전통을 깨고 비장애인을 임명해서 장애계의 반발을 크게 샀는데 그 취지, 목적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차관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동안에.

우선 장애인 당사자를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시킨다는 그런 취지가 있고 그것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장애인 분야의 전문성 또 장애인 당사자로서의 감수성을 행정에 반영하자는 취지도 있고 무엇보다 장애인 단체, 민간과의 소통 기능을 강화시켜서 장애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소중한 의미가 있는 제도이니만큼 정부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위원님 말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차관님, 이번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바꿨는데 가입자들이 반대했는데도 일방적으로 개정을 한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가입자분들은 반대를 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용자분들은 찬성을 했습니다.

○**강은미 위원** 반대했습니다.

그동안에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 의결 안건이 통상적으로 사전에 실무평가위원회 등을 거쳐서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따로 실무평가위원회의 논의가 없었는데 이유가 뭐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사실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저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은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강은미 위원** 아니, 기타 요건이 있으니까 기타 안건, 이 요건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그런데 그동안에 어쨌든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이 여러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했고 앞서서 남인순 위원님께서도 여쭙봤지만 표결로 한 적이 없었어요. 그것은 충분하게 논의가 됐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이번에는 표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강행 처리한 것이 복지부가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의도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강은미 위원 의도가 없었어요. 의도가 없었는데, 개정 배경에 전문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추천 전문가 단체 예시를 보니까 자본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뿐이에요. 심지어는 금융투자협회는 모든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이 가입된 단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가입자 단체들의 목소리를 지운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사고 있어요.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말씀 주신 대로 900조 원 넘는 기금을 잘 맡아서 잘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책임지고 관리하는 전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렇지요.

지난 2015년도에 삼성물산 합병 사건 때 국민연금기금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실제로 3000억에서 7000억 정도 손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수탁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번에 단체 추천을 받아서 선임을 했는데 몇 명 추천받아서 몇 명 위원을 결정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희가 한 10개가 넘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세 분을 임명한 것이고요.

○강은미 위원 18명 추천 받아 가지고 3명 한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18명이나 추천받아서 3명을 선임하는 과정에 결국은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실제로 수탁위는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데 그 독립성이 훼손돼서 결국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선정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지난번 삼성물산, 여러 가지 사례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수탁위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도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개입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강은미 위원 개입할 의도가 없으면 충분하게 논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됐다고 봐요. 그리고 결국 이번에 추천한 명단을 보더라도 그러면 그 선임한 사람들은 그런 전문성이나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됐느냐라고 보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거든요, 1기 때하고. 그러면 결국은 가입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그냥 정부의 입김만 강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독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 이런 문제만 되는 거라고 보입니다.

결국은 국민연금기금이 정권에 따라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정권의 의지대로 운영된다고 하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보여 준 정경유착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요즘 사회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기업의 책임 부분, ESG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가 필요한 건데요.

그러면 지금 가입자 단체들이 추천하는 방식이더라도 그 방식을 그런 다양성과 전문성 그다음에 해외투자에 대한 문제 등등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는 방식이어도 충분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좀 잘못돼 있고 그런 면에서 원상으로 돌려놔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은 잘못된 정부 개입이…… 또다시 삼성물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우려가 큼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정춘숙 예, 짧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희도 삼성물산 사례를 반면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내주신 기금을 소중하게 저희가 잘 관리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영 위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요.

차관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복지부는 장시간 노동과 건강 연관성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당 40시간 근무에 비해서 50시간, 60시간 이렇게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아시는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현영 위원** 말씀해 보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여러 가지로 전공의라는 것이 사실은 근로자와 교육생, 2개가 같이 있습니다.

○**신현영 위원**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현영 위원** 어떤 부분에서 안 좋아질지 혹시 구체적으로 아시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과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특히 많은 전공의들이 또 한편 여성 전공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모성에 대한 것도 우려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영 위원** 전공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전체 노동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인 대상 연구인데요, PPT 보시면 주당 근무시간이 10시간 늘어날 때마다 심근경색은 4배, 우울과 자살충동도 5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이미 근거가 있습니다.

불규칙한 노동도 마찬가지로요. 주말 근무가 증가할수록 근로자의 우울과 불안이 2.4배, 전신 피로와 불안, 불면, 수면장애 등이 2배로 올라가는 등 이미 의학적으로는 많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노동시간은 주당 40시간 그리고 최장 52시간 상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의 윤석열 정부의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국민 건강의 측면에서 보건복지부는 법정 노동시간 40시간 개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희도 기본적으로 노동부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현영 위원** 그러면 60시간, 69시간 이런 부

분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긍정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전공의에 대해서는 저희도 원래 전공의법에 된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현영 위원** 저는 아직 전공의에 대해서 언급 안 했는데 계속 전공의만 말씀하셔서…… 우리 국민의 노동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관님.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국민의 노동시간에 대해서 지금 노동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신현영 위원** 복지부의 입장에서는 국민 건강 영향의 근거가 충분한 만큼 주당 40시간, 52시간 개편에 대해서는 건강 측면에서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특히 흉부외과 전문의는 주당 102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차관님이 보실 때는 적절한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몇 시간으로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원래 법적으로 80시간 되어 있고 8시간 추가해서 88시간이 맵시범으로 돼 있습니다.

○**신현영 위원** 법적인 것 말고요 적절한 시간은 몇 시간이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마 그것 같습니다. 옛날에 김용익 의원님께서 전공의법을 발의했을 때 사실 그전에는 130시간까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라는 자체가 근로자성으로 보게 되면 42시간 그게 맞을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교육생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때 법적으로 88시간을 맵시범으로 정했습니다.

○**신현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80시간보다 더 줄어야 된다고 보건복지부는 입장을 갖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건 의견을 좀 수렴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영 위원** 충분한 논의를 하시면서 적정 시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요.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요. 교육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를 했는데 한 해에 3만 명에서 9만 명까지 매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관님, 이 학생들이 피해 이후에 학교생활 잘 하는지, 성인 돼서도 사회 적응 잘하는지 살펴보는 것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건 저희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만드는 중에 있고 저희에게도 심리지원 파트 요청이 들어와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그래서 학교폭력예방·대책 법률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회의가 마지막으로 작년 3월에 열렸습니다.

혹시 윤석열 정부에서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거나 아니면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마 교육부 중심으로 지난 3월 달에 회의를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회의인지, 아마 관계부처회의는 있었습니까.

○**신현영 위원** 범부처회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가 학폭과 건강 영향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데요.

피해 학생을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들은 학폭 피해자의 후유증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되는 사례가 63%라고 답변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미국 CDC 홈페이지도 보면 청소년 폭력 관련해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피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 기반의 멘토링 프로그램, 지역사회 보호기전 그리고 병원 커뮤니티 파트너십 이런 장기적인 의료와 심리 프로그램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와 같이 협심해야 될 것 같고요.

지영미 청장님,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체계적이고 평생 지원, 장기 프로그램에 대한 역할을 질병관리청과 정부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말씀 주시지요.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저희도 외국 사례를 보면서 복지부와 함께 질병청의 역할을 잘 살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영 위원**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차관님께 질의하게 되네요.

국민 비타민 서영석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잘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서영석 위원**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차관님, 지금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검사를 임명했고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검사를 임명하려다 실패했는데 거기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상근전문위원으로 한석훈 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운용을 검사가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검사 생활도 십여 년 했지만 또 로스쿨 교수를 15년을 하신 분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복지부가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국민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애써 온 사람들이 검사가 아니니까 잘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역가입자 또 근로자, 사용자 모두 각 단체에서 공히 추천하신 분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사용자 단체에서는 경총하고 상의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천을 복수로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공동으로 추천된 분이 사실 이번에 뽑혔던 그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검사라 그래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변명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국민연금, 국민의 노후자금조차도 검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적,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가 그동안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 가입단체로부터 3명씩을 추천받았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3·3·3으로

했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복지부가 지금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3명을 줄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단체한테 추천을 받겠다 이렇게 한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지 않습니다. 수책위라는 자체가 기금운용이라든지 해외증권 책임 투자를 하는 그런 전문적인 위원회입니다. 지금 9명으로 운영되어 있었고요. 3명, 3명, 3명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1기 같은 경우도 6명이 사실은 법률이라든지 회계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그런 분야에 대해서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가입자단체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전문가 단체들에 의해 가지고 정권이 생각하는, 정권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그런 취지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삼성물산이라는 그런 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할 의사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만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번에 3명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차관님 말씀대로만 되면 걱정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시중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결국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사유화하겠다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고,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특히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개악 문제도 그렇고 대일 굴종·굴욕 외교 참사를 봐도 그렇고 결국은 국민이 반대해도, 문제가 있어도 거리낌 없이 하겠다 이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저희는 수책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표성도 같이 함께 가기 위해서 이번에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려스러워서 지적합니다. 국민의 노후 재산을 불리는 일보다 검사 출신을 앞세워서 연금이 갖고 있는 막대한 자본을 악용해서 민간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일이 절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권이 결국은 위원들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해서 가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정권에 사적 이익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진행되지 않은 그런 정책이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해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 절대 없도록 저희가 유념해서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입니다.

안건 103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3월 16일 날 토론회를 개최해서 마약류 중독 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현장 얘기가 생생하게 나오다 보니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우리나라에 마약중독 치료에 대해 상당한 권위자분들이 계신데도 우리나라는 아직 마약중독 치료방법 연구에 대한 관심도가 태부족해서 어떤 전문가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고 한 분은 중국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하는 웃지 못할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독치로나 재활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데 그날 의견이 모여졌습니다. 이것은 결국 마약중독 조기치료의 실기로 이어지고 또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장기치료로 가서 한 사람의 인생이 파헤쳐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복지부 담당자도 올해 복지부 R&D 사업 전체 64개 중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R&D는 단 2건밖에 안 된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마약중독 치료연구 관련 정책이 거의 없다시피한 것을 토대로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마약중독 예방과 치료와 같은 수요 억제정책에 대해서는 공급차단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동의합니다.

○서정숙 위원 아주 동의하시고 절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작금의 사태가 마약중독을 접하는 연령층이 10대까지 내려가고 있고 또 전체적인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또 마약의 공급경로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 마약류 사용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게 좀 늦은 감이 들지만, 미국의 한 예를 들어 보면 1970년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74년에 국립약물남용연구소를 설립하고 마약중독과 치료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약 2조 4300억에 달합니다. 우리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지요.

우리도 좀 효율적인 마약중독 치료방법과 중독 양태를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동의하시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동의합니다.

○서정숙 위원 이걸 절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러한 치료연구를 비롯해서 마약중독 관련 정책에 있어서 치료·재활·예방·교육 등 주요 역제의 측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가 됐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약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마약을 접한 국민들은 중독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지 않도록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이 법의 취지와 변화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믿고 싶은데 식약처 차장님도 함께 동의하시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권오상 예, 동의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복지부도 동의합니다.

○서정숙 위원 차장님 오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반드시 통과될 필요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복지부와 식약처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노력의 과정을 저희 의원실에도 추후 행정부와 저희가 힘을 합해야 되니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종합적으로.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 내용은 실태조사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동의하면서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숙 위원 예산도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윤 위원 국민연금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관님 공직에 오래 있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조직, 예산, 인사가 있는데 특히나 인사는 메시지의 축약판입니다. 인선과 인사는 그렇지요. 이 사람을 왜 여기에 임명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건 확실히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 수책위 활동을 보면, 아까 강은미 위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부터 연금공단 이사장도 그러셨고 대통령께서도 금융위 신년 업무보고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라 이런 지침을 말씀하셨어요. 그건 결국 뭐냐 하면, 국민연금 수책위의 핵심 활동이 뭐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금관리 잘하고 그리고 가입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수책위 활동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얘기했던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라는 얘기는 그런 활동을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라는 얘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최종윤 위원 수책위 인사 문제는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KT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KT가 국민연금 대주주 중에 하나잖아요. 구현모 사장이 연임의사를 밝히고 노조도 찬성하고 소액주주도 찬성하고 글로벌 의결 자문사도 찬성을 해 줬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반대해서 결국은 철회한 것 아시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총회가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최종윤 위원 남아 있는데 연임의사를 철회한

거지요. 연임의사를 철회하셨잖아요. 그 양반 연임 철회한 것 아닌가, 구현모 사장님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이유가 뭐였어요, 그때 당시에 KT 구현모 사장 있을 때 국민연금에서 제시한 ‘이래서 안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종윤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 계셔야 된다고요.

이게 뭐냐 하면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책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 하면 기업활동을 감시하거나 또는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범죄행위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떨어져서, 여기에 국민연금이 투자를 했는데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거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게 되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그 원칙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윤 위원 보면 구현모 사장이 오너 리스크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보니까 KT는 구현모 사장 오면서 실적도 2배로 뛰고 주가가치도 2배로 뛰고, 다만 절차상 공모 과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 하나 가지고 제기를 했거든요.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것이 안 되고, 오늘 조간신문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사회에서 추천했던 윤경림 사장 후보가, 대표후보가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아침에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못 봤습니다.

○최종윤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후보로 선임이 됐고 그다음에 어저께 ESG평가원에서도 오케이, 찬성의견을 발표했구요. 글로벌 의결 자문사에서 다 찬성의견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도 찬성의사를 발표했고. 오직 앞으로 예상되는 건 뭐냐 하면 국민연금하고 현대자동차만 반대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너리스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각 주체에서 다 찬성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철회의사를 오늘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결국 31일 날 주주총회 하는데 제가 보기에 바뀔 것 같아요.

차관님께서 말씀하실 일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은 반대의사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종윤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왜 반대를 해야 되는지 근거를 명쾌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수책위의 본연의 업무에 근거가 확실하게 주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러겠습니다.

○최종윤 위원 개입 안 하시고 절대적 개입 없이 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이것은 지금 여태까지 보면 투자한 기업의 임원 선임이라든지 대표 선임하는 것이라든지 인사를 할 때 수책위가 기업 가치를 유지하거나 국민연금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정치권의, 정권의 선호에 맞거나 입김에 맞는 사람들을, 맞지 않는 사람은 찍어 내고 맞는 사람은 심기 위해서 이걸 이용했다는 의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조만간 바로 4대 금융지주회사 주주총회 열리고요. 31일 KT 주주총회 있잖아요. 이럴 때 근거가 뭐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수책위는 어떤 발언을 했는지 다 수집해서 이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만약에 개입하거나 뭘 할 수 있다면 왜 지금 제가 모르고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모르는 내용입니다, KT 건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종윤 위원 그러면 차관님이 무능하신 거예요.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데. 그리고 국민연금이 공개적으로 반대했는데.

오늘 확인해 보세요. 언론보도 확인하셔 가지고, 어제 조찬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철회의사를 밝혔다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영 위원 차관님,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법안 관련해서 대표발의를 해서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그러겠습니다.

○최혜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도지요.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그때 국민연금을 통해서 부당하게 개입하는 치욕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복지부장관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장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들을 도왔던 복지부 직원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좀 전에 PPT 봤습니다.

○최혜영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삼성물산 사태를 교훈 삼아서 수탁자책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구성을 하면서 정부의 개입 차단은 당연히 하고요. 또 기금운용을 심의 의결하는 기금운용위 위원조차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탁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는데요.

이게 수탁위 구성 당시 복지부가 낸 자료입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2017년도입니다. 이때 보도자료를 보시면 특정이해관계자 입장이 반영되지 않도록 사용자·근로자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것 보시면 2018년도입니다. 그 당시 때 보도자료 보시면 복지부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 전문위는 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각계대표의 추천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을 하여 이해상충 방지와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지금 위원님 보도자료 보고 있습니다.

○최혜영 위원 보도자료는 복지부에서 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탁위 구성이야말로 삼성물산 사태의 반성이자 초심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 복지부는 이런 수탁위의 가입자단체 인사를 줄이고 정부 추천 인사를 넣었습니다.

차관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개입할 의도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사항을 보면 과거의 오명을 씻기 위한 반성과 초심을 지금 현재 윤 정부가 또 복지부가 뒤집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면 국민연금에게는 가해자가 정부지요. 이 정부가 치욕적인 과거에 대한 반성을 못 할지언정 사건 발생 이후에 지금 1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피해자인 국민연금에게 가해자는 잊었다면서 다시 학대를 하고 있는 꼴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모 드라마의 대사지요.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다. 지금 이렇게…… 이 정부는 왜 이렇게 과거를 잊고 이상한 미래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 없이는 글로리한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다음에 임시회 때 꼭 처리할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장관님께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위원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이기일 차관님, 지난 2월 인천에서 발생했지요. 부모 방임으로 2세 아동 사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 위원 정부의 위기경보시스템이 또 제대로 작동을 안 했어요. 정부 시스템에 감지된 이번 아이의 위기신호는 여러 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게 예방접종 받지 않았던 거예요. 차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이 키우면서 예방접종을 계속해서 받지 않는 건 이진 굉장한 사인이예요 레드 플래그(red flag)인데 이게 감지가 안 됐어요.

그러면 현재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 AI가 각종 위기정보 그리고 그동안 발생했던 아동학대 케이스를 학습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학대가 의심된다 하고 분류를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 보면 그러면 그동안에 발생한 학대 케이스가 아니거나 아니면 이 AI가 학습돼 있는 그런 위기정보가 아니면 발굴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저는 보여요, 이 틈이 메워지려면. 그러면 최소한 그때까지는 인력이 따라붙어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AI라는 것은 사람이 일을 하는 데 보조 수단, 도와주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한 번만 이것을 좀 살펴보고 현장에 나갔으면 이 아이는 방임은 그렇게 됐다고 해도 최소한 목숨은 잃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잖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게 AI랑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이 조금 더 완벽해지기까지는. 그래서 그때까지는 최소한 인력을 좀 늘려야 된다, 인력 늘렸으면 아이 목숨은 살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 위기아동을 직접 살펴보고요. 또 위기아동에게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복지공무원 배치만이 사각지대를 지금 메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재정비안을 저희 의원실이랑 공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시간이 2분 남았으니까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님, 희귀질환에 대해서 국가관리 강화방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3월 6일에 저희 의원실에서 주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삶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의 국가관리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였는데 그 희귀 건선질환, 전신농포건선이랑 그다음에 2차성 희귀질환입니다. 선천성 아니고요. 후천성 단장증후군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질환들은 국가 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굉장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후천성 단장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선천성이랑 모든 겪는 어려움은 똑같아요. 그런데 선천성은 또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이것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분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지원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신농포건선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접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5년째 계속 검토만 되고 있는데 이 전신농포건선 희귀질환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또 관련해서 향후 계획 어떠신지 여쭙습니다.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희귀질환자들이 정말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희귀질환 지정확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노력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기존에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1년이라는 기간보다 더, 1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그리고 증상을 보고서 분류가 돼야지 이게 선천성이나 후천성이나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숙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을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다 발언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87항부터 제142항까지의 법률안 및 청원은 소관 구분에 따라 각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법안 및 청원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강선우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 최혜영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서면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3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강 기 윤	강 선 우	강 은 미	강 훈 식
고 영 인	김 미 애	남 인 순	백 중 현
서 영 석	서 정 숙	신 현 영	이 중 성
인 재 근	전 혜 숙	정 준 숙	최 연 숙
최 영 희	최 재 형	최 중 윤	최 혜 영
한 정 애			

○청가 위원(3인)

김 민 석 김 원 이 조 명 희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진 선 희
전 문 위 원	최 선 영
전 문 위 원	정 경 윤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 관	조 규 홍
제 1 차 관	이 기 일
기획조정실장	김 현 주
연금정책국장	이 스 란
정책기획관	정 경 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차 장	권 오 상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유 현 정
질병관리청	
청 장	지 영 미
차 장	김 현 준
기획조정관	양 동 교

【보고사항】

○의안 회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3. 2. 23. 장철민 · 박상혁 · 정일영 · 김주영 · 윤관석 · 전재수 · 한준호 · 이원욱 · 허종식 · 김윤덕 · 이상민 · 한정애 · 김정호 의원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3. 2. 23. 김승원 · 신정훈 · 서삼석 · 윤준병 · 한병도 · 임종성 · 양이원영 · 정필모 · 주철현 · 민병덕 · 서영석 · 강민정 · 김정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4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3. 2. 24. 양경숙 · 강민정 · 김경만 · 김병주 · 김정호 · 김홍걸 · 윤준병 · 이병훈 · 장경태 · 조오섭 · 주철현 의원 발의)

2월 27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인재근 · 최중윤 · 고영인 · 이장섭 · 김민기 · 서영석 · 강선우 · 김남국 · 서동용 · 소병훈 · 김영진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인재근 · 남인순 · 양정숙 · 최중윤 · 한정애 · 권인숙 · 이장섭 · 고영인 · 김정호 · 김민기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이종성 · 성일종 · 박덕흠 · 조명희 · 박대수 · 전봉민 · 조은희 · 박성민 · 이명수 · 유상범 의원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김민기 · 고용진 · 김정호 · 민병덕 · 민홍철 · 박상혁 · 이재정 · 이원욱 · 인재근 · 임호선 · 정필모 · 최혜영 · 허영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양정숙 · 김승원 · 김정호 · 한병도 · 윤미향 · 이상현 · 위성곤 · 황운하 · 윤준병 · 최승재 · 민형배 · 심상정 · 이용빈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3. 3. 2. 김상희 · 유정주 · 김정호 · 정성호 · 최혜영 · 용혜인 · 김승남 · 정태호 · 박용진 · 김두관 · 윤준병 · 임종성 의원 발의)

이상 6건 3월 3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 의원 대표발의)

(2023. 3. 6. 최재형 · 구자근 · 김성원 · 김예지 · 서일준 · 성일종 · 양금희 · 이명수 · 지성호 · 최영희 · 한무경 의원 발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3. 6. 김민석 · 홍정민 · 조정훈 · 안민석 · 황희 · 이상현 · 김성주 · 김희곤 · 조오섭 · 박정 · 신정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7일 회부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3. 3. 7. 신현영 · 김한규 · 김병욱 · 김병기 · 김정호 · 이용선 · 김성주 · 진성준 · 최기상 · 권칠승 · 설훈 · 김수홍 의원 발의)

3월 8일 회부됨

대한노인회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3. 3. 8. 김원이 · 안철수 · 김승원 · 김정호 · 김민철 · 조정식 · 양정숙 · 한준호 · 최영희 · 김희재 · 송재호 · 이형석 · 박정 · 장철민 · 박광온 · 조정훈 · 김주영 · 홍성국 · 강준현 · 조승래 · 김한규 · 박상혁 · 오영환 · 안호영 · 임오경 · 윤호중 · 우원식 · 김수홍 · 김남국 · 박영순 · 한병도 · 이원욱 · 허영 · 윤상현 · 윤후덕 · 민병덕 · 유동수 · 윤영석 · 윤영덕 · 홍기원 · 강득구 · 박진 · 주철현 · 김형동 · 고용진 · 위성곤 · 서정숙 · 민홍철 · 최인호 · 김석기 · 김성원 · 김병욱 · 이소영 · 이개호 · 조오섭 · 허종식 · 김용민 · 박재호 · 정우택 · 전해숙 · 최재형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3. 3. 8. 윤후덕 · 홍기원 · 김철민 · 박상혁 · 송갑석 · 김남국 · 김주영 · 김정호 · 이원욱 · 조오섭 · 이형석 · 박정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2023. 3. 8. 김경만 · 양정숙 · 박찬대 · 강민정 · 김주영 · 신정훈 · 윤재갑 · 안호영 · 전재수 · 윤영덕 · 이동주 · 조오섭 · 양이원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9일 회부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3. 3. 9. 홍성국 · 김승남 · 홍익표 · 이개호 · 양기대 · 김태년 · 장철민 · 박광온 · 김경만 · 위성곤 · 김한규 · 박상혁 · 민병덕 · 조승래 · 이원욱 · 윤영찬 · 홍기원 · 김영진 · 이용선 · 김수홍 의원 발의)

3월 10일 회부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3. 3. 10. 설훈 · 김홍걸 · 용혜인 · 오영환 · 강병원 · 윤재갑 · 양향자 · 배진교 · 박완주 · 김승남 · 양경숙 · 윤영덕 의원 발의)

3월 13일 회부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2023. 3. 13. 설훈 · 조승래 · 오영환 · 이수진 · 윤영덕 · 김홍걸 · 배진교 · 박완주 · 김승남 · 양경숙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3. 3. 13. 최혜영 · 서영석 · 김민석 · 강훈식 · 정춘숙 · 김원이 · 최종윤 · 신정훈 · 김영진 · 김성주 · 김홍걸 · 이수진(비) · 강득구 · 남인순 ·

김남국 · 김용민 · 고영인 · 기동민 · 김상희 · 강민정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3. 3. 13. 구자근 · 김석기 · 김선교 · 안병길 · 이종배 · 권명호 · 박대수 · 김용판 · 서병수 · 김기현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3. 3. 13. 강훈식 · 김경만 · 김병욱 · 김성원 · 김한규 · 박상혁 · 이소영 · 이학영 · 위성곤 · 장경태 · 장철민 · 최혜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14일 회부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3. 3. 14. 신현영 · 윤영덕 · 고영인 · 김한규 · 김병욱 · 김병기 · 김정호 · 이용선 · 진성준 · 권철승 의원 발의)

3월 15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3. 3. 15. 윤재갑 · 이병훈 · 송재호 · 강민정 · 고민정 · 이개호 · 신정훈 · 문진석 · 홍문표 · 주철현 · 서동용 · 서삼석 · 김승원 · 송갑석 의원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3. 3. 15. 정희용 · 윤창현 · 최준식 · 구자근 · 안병길 · 김영식 · 양금희 · 이용 · 윤재옥 · 김희곤 · 김예지 · 주호영 의원 발의)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3. 3. 15. 윤재갑 · 김정호 · 신정훈 · 오영환 · 이병훈 · 위성곤 · 송재호 · 주철현 · 홍문표 · 윤영덕 · 송갑석 · 김남국 · 이개호 · 김승원 · 서동용 · 서삼석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3. 15. 김민석 · 강득구 · 강훈식 · 고영인 · 권철승 · 김성주 · 김영호 · 김희곤 · 박주민 · 신동근 · 신정훈 · 이상현 · 이용우 · 정춘숙 · 조오섭 · 조정훈 · 최혜영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3. 3. 15. 김남국 · 양정숙 · 양경숙 · 윤재갑 · 이개호 · 서영교 · 위성곤 · 권철승 · 민형배 · 정태호 의원 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3. 3. 15. 정춘숙·윤관석·김영진·김민석·김정호·김윤덕·최혜영·윤후덕·권칠승·김상희 의원 발의)

이상 6건 3월 16일 회부됨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3. 3. 16. 김홍걸·이상현·박용진·오영환·이병훈·유정주·최종윤·김정호·양정숙·윤호중·이상민·배진교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3. 3. 16. 최종윤·최혜영·한준호·윤건영·정일영·조승래·윤준병·이인영·정태호·박용진·김민철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23. 3. 16. 권성동·박정하·金炳旭·임병헌·엄태영·한무경·백종현·황보승희·박성중·윤한홍·송석준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3. 3. 16. 위성곤·홍성국·양정숙·홍정민·최종윤·김병주·백혜련·이개호·안규백·김남국·윤준병 의원 발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3. 16. 한정애·김홍걸·김영주·박홍근·서영교·윤미향·인재근·김정호·민홍철·윤호중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3. 3. 16. 김주영·강민정·김종민·이개호·김정호·윤건영·홍정민·최혜영·조오섭·정일영·홍기원·이성만·김승남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3. 3. 16. 강훈식·김교홍·김윤덕·신정훈·이학영·장철민·김승남·김민석·우원식·이소영·장경태·정필모·허영 의원 발의)

디지털의료제품법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

(2023. 3. 16. 백종현·전봉민·서병수·정동만·이현승·안병길·정운천·이종성·최춘식·황보승희 의원 발의)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3. 3. 16. 서영석·이성만·신정훈·김병욱·최종윤·김성주·김한규·정춘숙·이용빈·

이용선·민병덕·임종성·안민석·고민정·강준현 의원 발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3. 3. 16. 김민석·강병원·김경만·김정호·김희곤·정춘숙·박정·권칠승·홍정민·조정훈·이상현 의원 발의)

이상 10건 3월 17일 회부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3. 3. 17. 강훈식·김교홍·김윤덕·신정훈·이학영·장철민·김민석·우원식·이소영·장경태·정필모·허영·조오섭·최기상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3. 3. 20. 신현영·강준현·고영인·송갑석·황운하·변재일·김병기·권칠승·조오섭·이용우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0일 회부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23. 3. 20. 조은희·박정하·조명희·서일준·이명수·한무경·태영호·이용·윤두현·정경희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3. 3. 20. 강훈식·김교홍·김윤덕·신정훈·이학영·장철민·김민석·우원식·이소영·장경태·허영·조오섭·최기상 의원 발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3. 3. 20. 김주영·강민정·김종민·이개호·김정호·윤건영·홍정민·최혜영·김원이·조오섭·정일영·홍기원·이성만·어기구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3. 20. 한정애·김홍걸·김영주·조웅천·서영교·김상희·윤미향·인재근·김정호·이원욱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21일 회부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3. 3. 21. 김남국·김정호·김의겸·박주민·권칠승·김윤덕·조승래·서영교·강민정·문진석·김병욱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3. 3. 21. 노웅래 · 강민정 · 김승원 · 이병훈 ·
정일영 · 강득구 · 김승남 · 이수진(비) · 정성호 ·
양기대 · 진성준 · 맹성규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3. 3. 21. 이종성 · 조정훈 · 김용관 · 박대수 ·
전봉민 · 김미애 · 조경태 · 김성원 · 정경희 ·
이태규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22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23. 2. 28. 황희 · 김민석 · 고용진 · 이용선 ·
윤주정 · 홍정민 · 김성환 · 김윤덕 · 안규백 ·
이재정 · 김종민 의원 발의)

3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도로공간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3. 3. 9. 김병욱 · 김태년 · 허종식 · 이용빈 ·
서영석 · 문진석 · 정성호 · 정춘숙 · 김윤덕 ·
천준호 · 박상혁 · 김정호 의원 발의)

3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3. 3. 15. 김미애 · 성일종 · 이종성 · 임이자 ·
배현진 · 이현승 · 조은희 · 박수영 · 한무경 ·
金炳旭 · 장동혁 · 조정훈 의원 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3. 3. 15. 윤재갑 · 김정호 · 신정훈 · 오영환 ·
이병훈 · 위성곤 · 송재호 · 주철현 · 홍문표 ·
윤영덕 · 송갑석 · 이개호 · 김승원 · 서동용 ·
서삼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보건복지부	2	-	3	-	-	14
식품의약품 안전처	-	2	1	2	1	2
질병관리청	-	-	-	1	4	3